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1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2011년 11월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각각 5.6%, 2.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컴퓨터(-27.9%), 영상음향통신(-17.8%), 기계장비(-5.0%)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1.7%), 자동차(14.4%), 금속가공(8.0%)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5.6%), 협회·수리·개인(-0.8%) 등은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5.2%), 도매·소매(2.2%), 보건·사회복지(6.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4%), 운수(2.1%)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음.
- 2011년 1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소비자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4%),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는 감소하였으나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5.8%)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하였음.
  - 정밀기기, 기타 운송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하였음.
  - 건설기성(경상)은 공중에서 주거와 플랜트 및 일반토목 등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실적저조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공공 부문에서의 공동주택 및 관공서, 도로 및 발전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

문에서는 상업용 건물 및 공장, 통신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6%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201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2% 상승(생활물가지수 4.4% 상승)

- 2011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여 지난달과 같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 부문(-3.5%)만 하락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7.5%), 교통(6.3%), 주택·수도·전기·연료(5.9%), 의류·신발(4.4%), 음식 및 숙박(4.4%)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음.
  - 2011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5.4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은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6.5% 각각 상승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	3/4p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1.2	10.6	7.2	5.1	5.6(-0.4)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1.4	10.9	7.4	5.1	5.9(-0.3)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1.7	11.9	7.2	4.9	3.0(-1.1)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9.7	7.2	3.8	2.5	-0.9(-0.2)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4.5	18.4	11.6	8.0	8.0(-1.6)
	서비스업 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3.8	2.7	3.3	4.2	2.6(-0.5)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6.9	5.1	5.7	4.4	0.5(-0.6)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13.1	6.6	4.8	-3.5	-3.7( 7.7)
물가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3.0	4.8	4.2	4.8	4.2( 0.4)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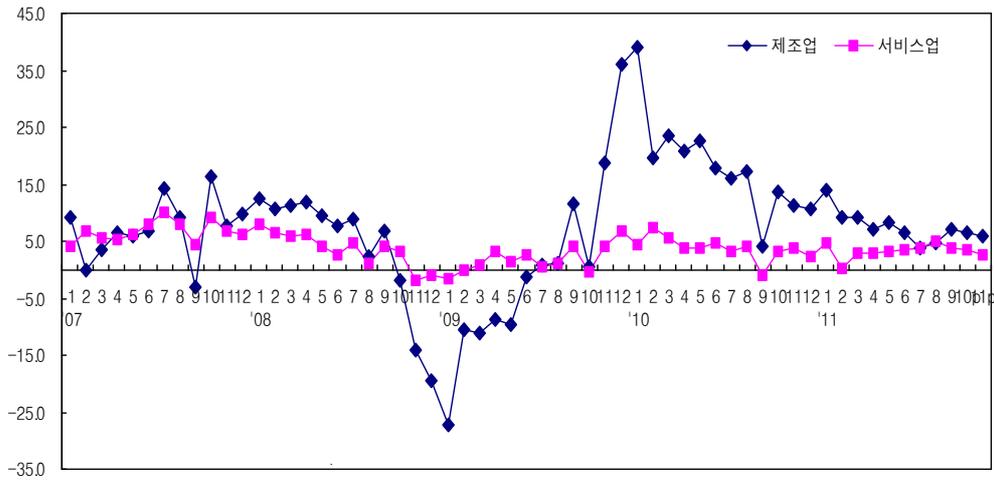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12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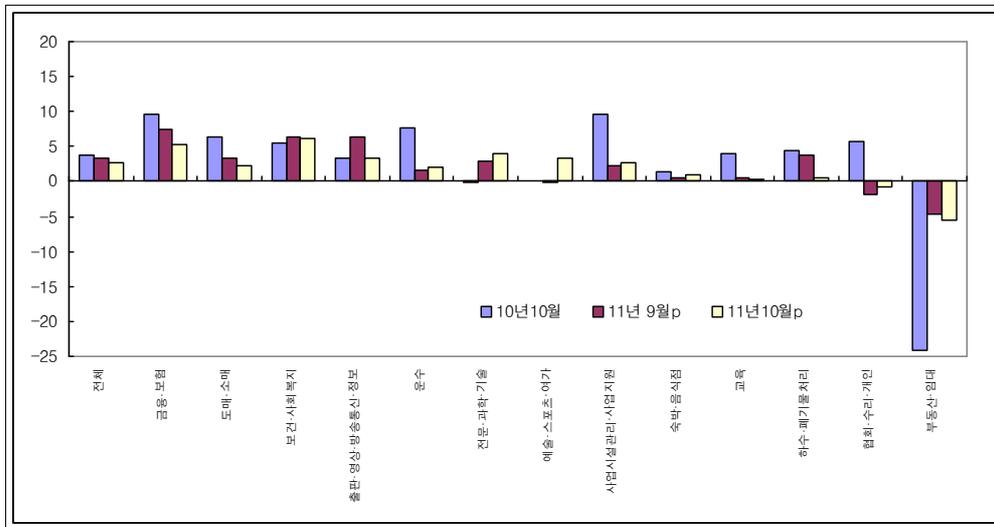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1. 12), 『201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고용률 증가

- 2011년 경제활동인구는 25,099천 명으로 전년대비 351천 명(1.4%)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683천 명으로 191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16천 명으로 160천 명(1.6%) 증가하였음.
- 201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대비 0.1%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1%)이 전년대비 0.1%p 증가한 반면, 여성(49.7%)은 전년대비 0.3%p 증가함(그림 3 참조).
- 2011년 고용률은 59.1%로 전년대비 0.4%p 증가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음.
- 2011년 취업자는 24,244천 명으로 전년대비 415천 명(1.7%)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153천 명으로 전년대비 238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091천 명으로 전년대비 177천 명(1.8%)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1년 실업자는 855천 명으로 전년대비 65천 명(-7.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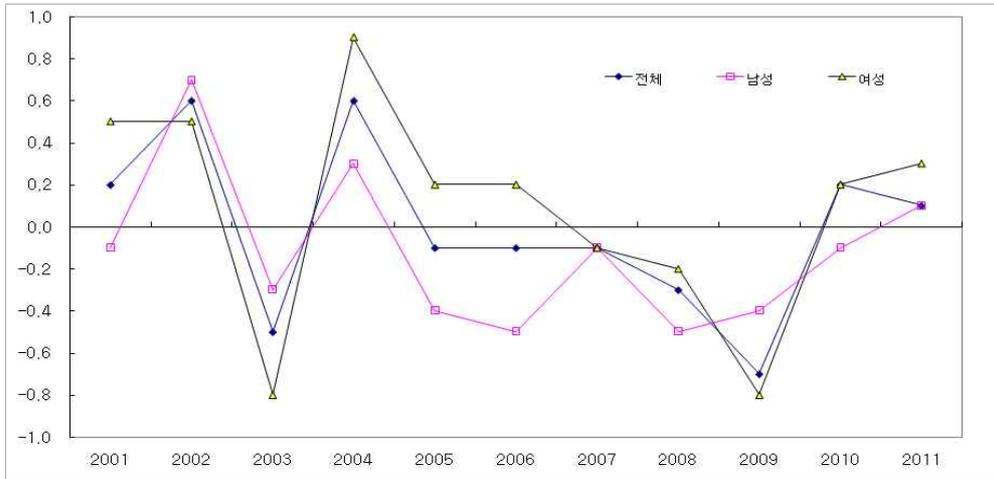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1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4,216 ( 1.0)	24,347 ( 0.5)	24,394 ( 0.2)	24,748 ( 1.5)	24,796 ( 1.4)	24,538 ( 2.0)	25,099 ( 1.4)	25,202 ( 1.6)	24,880 ( 1.4)
참가율	61.8	61.5	60.8	61.0	60.8	60.1	61.1	61.1	60.3
취업자	23,433 ( 1.2)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3,989 ( 1.5)	23,684 ( 2.0)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고용률	59.8	59.5	58.6	58.7	58.9	58.0	59.1	59.4	58.5
실업자	783	769	889	920	808	853	855	740	754
실업률	3.2	3.2	3.6	3.7	3.3	3.5	3.4	2.9	3.0
비경제활동인구	14,954 ( 1.2)	15,251 ( 2.0)	15,698 ( 2.9)	15,841 ( 0.9)	15,962 ( 0.3)	16,265 ( 0.1)	15,953 ( 0.7)	16,014 ( 0.3)	16,394 ( 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2. 1),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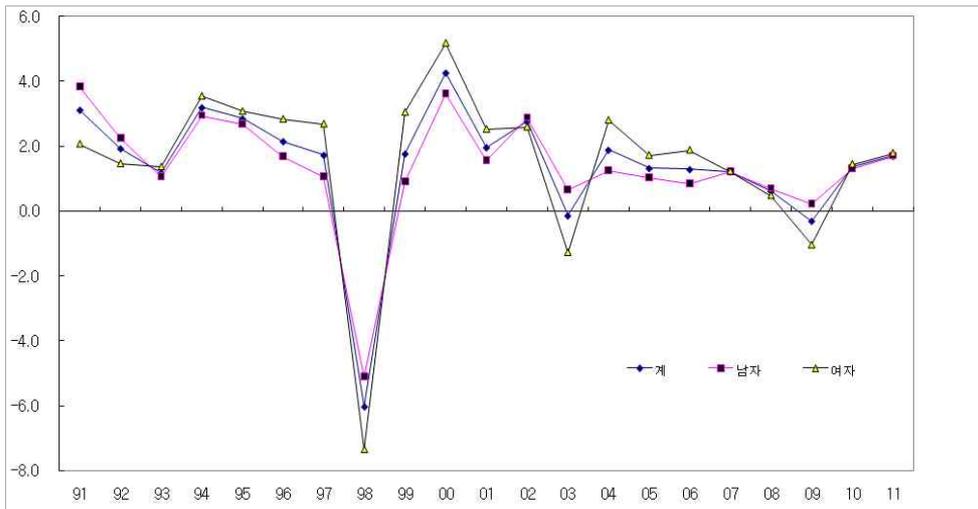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470천 명으로 전년대비 41천 명(-8.0%)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70천 명으로 전년대비 27천 명(-9.1%)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2%로 전년대비 0.3%p 감소한 반면, 여성은 2.6%로 전년대비 0.3%p 감소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1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5,953천 명으로 전년대비 112천 명(0.7%)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93천 명으로 전년대비 36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61천 명으로 전년대비 75천 명(0.7%)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254천 명으로 51천 명(-1.2%), 구직단념자는 211천 명으로 전년대비 9천 명(4.0%) 감소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00천 명으로 전년대비 182천 명(12.8%) 증가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 2011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63천 명,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8천 명,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3천 명, 4.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천 명, 0.4%)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5천 명, -1.6%), 건설업(-2천 명, -0.1%)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1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산업	23,433 ( 1.2)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3,989 ( 1.5)	23,684 ( 2.0)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농림어업	1,726 (-3.3)	1,693 (-2.0)	1,648 (-2.2)	1,566 (-5.0)	1,544 (-2.2)	1,231 ( 0.0)	1,542 (-1.6)	1,521 (-1.5)	1,206 (-2.0)
제조업	4,119 (-1.1)	4,079 (-1.0)	3,836 (-3.2)	4,028 ( 5.0)	4,131 ( 7.0)	4,156 ( 7.3)	4,091 ( 1.6)	4,056 (-1.8)	4,071 (-2.1)
건설업	1,850 ( 0.8)	1,819 (-1.7)	1,720 (-5.0)	1,753 ( 1.9)	1,761 ( 3.3)	1,726 ( 1.5)	1,751 (-0.1)	1,832 ( 4.0)	1,832 ( 6.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26 (-0.6)	5,677 (-0.8)	5,536 (-2.4)	5,469 (-1.2)	5,442 (-1.3)	5,488 (-1.4)	5,492 (0.4)	5,542 ( 1.8)	5,570 (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600 ( 4.8)	7,900 ( 4.0)	7,981 ( 4.6)	8,158 ( 2.2)	8,234 ( 1.0)	8,186 ( 2.4)	8,396 ( 2.9)	8,486 ( 3.1)	8,415 ( 2.8)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93 ( 2.6)	2,389 (-0.2)	2,761 (-0.9)	2,834 ( 2.6)	2,855 ( 1.9)	2,871 ( 1.0)	2,956 ( 4.3)	3,011 ( 5.5)	3,017 ( 5.1)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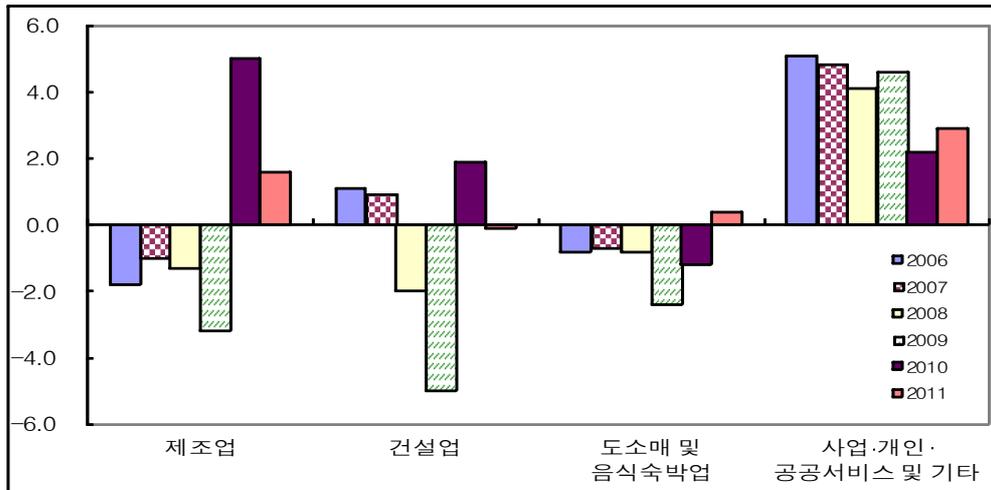
2) 9차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2. 1),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1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47천 명으로 전년대비 11천 명 (-0.2%)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397천 명으로 전년대비 427천 명(2.5%)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661천 명으로 575천 명(5.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990천 명으로 78천 명(-1.5%), 일용근로자는 1,746천 명으로 70천 명(-3.9%)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증가추세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그림 6 왼쪽 참조).

○ 2011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534천 명으로 전년대비 917천 명(25.4%)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290천 명으로 549천 명(-2.8%) 감소함.

◆ 전 연령층 실업률 하락

○ 2011년 연령계층별 실업자수는 15~29세(-20천 명), 30~39세(-12천 명), 40~49세(-20천 명), 50~59세(-10천 명), 60세 이상(-3천 명) 모두에서 감소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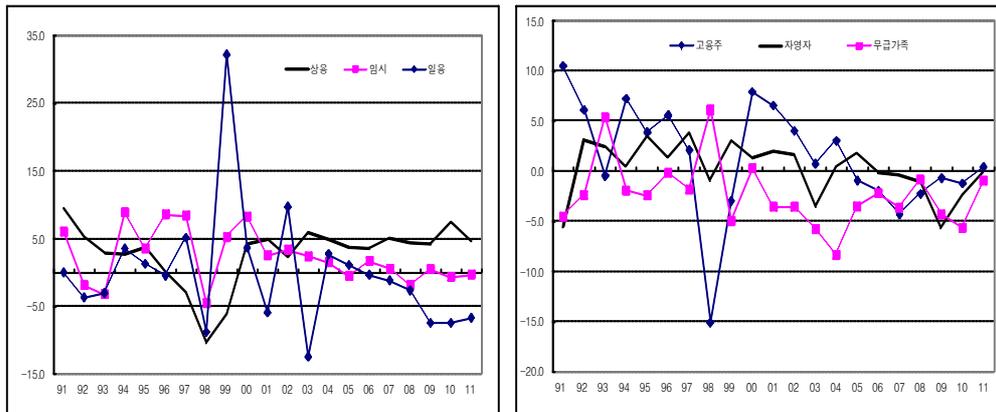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1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3,433 ( 1.2)	23,577 ( 0.6)	23,506 (-0.3)	23,829 ( 1.4)	23,989 ( 1.5)	23,684 ( 2.0)	24,244 ( 1.7)	24,462 ( 2.0)	24,125 ( 1.9)
비임금근로자	7,463 (-1.8)	7,371 (-1.2)	7,052 (-4.3)	6,858 (-2.7)	6,778 (-2.5)	6,531 (-2.2)	6,847 (-0.2)	6,878 ( 1.5)	6,629 ( 1.5)
자영업주	6,049 (-1.4)	5,970 (-1.3)	5,711 (-4.3)	5,592 (-2.1)	5,514 (-2.6)	5,387 (-2.3)	5,594 ( 0.0)	5,639 ( 2.3)	5,520 ( 2.5)
무급가족종사자	1,413 (-3.6)	1,401 (-0.9)	1,341 (-4.2)	1,266 (-5.6)	1,264 (-2.2)	1,144 (-1.5)	1,254 (-1.0)	1,239 (-2.0)	1,109 (-3.1)
임금근로자	15,970 ( 2.7)	16,206 ( 1.5)	16,454 ( 1.5)	16,971 ( 3.1)	17,211 ( 3.2)	17,154 ( 3.6)	17,397 ( 2.5)	17,585 ( 2.2)	17,496 ( 2.0)
상용근로자	8,620 ( 5.1)	9,007 ( 4.5)	9,390 ( 4.3)	10,086 ( 7.4)	10,320 ( 7.3)	10,347 ( 7.4)	10,661 ( 5.7)	10,820 ( 4.8)	10,824 ( 4.6)
임시근로자	5,172 ( 0.6)	5,079 (-1.8)	5,101 ( 0.4)	5,068 (-0.7)	5,052 (-2.2)	4,999 (-1.5)	4,990 (-1.5)	5,042 (-0.2)	4,986 (-0.3)
일용근로자	2,178 (-1.2)	2,121 (-2.6)	1,963 (-7.4)	1,817 (-7.5)	1,838 (-2.8)	1,808 (-2.2)	1,746 (-3.9)	1,723 (-6.3)	1,686 (-6.7)
36시간 미만	3,022 ( 7.5)	3,447 (14.1)	3,110 (-9.8)	3,617 (16.3)	3,090 ( 4.4)	3,276 ( 4.8)	4,534 (25.4)	3,217 ( 4.1)	3,250 (-0.8)
36시간 이상	20,081 ( 0.3)	19,781 (-1.5)	20,032 ( 1.3)	19,839 (-1.0)	20,620 ( 1.1)	20,114 ( 1.5)	19,290 (-2.8)	20,937 ( 1.5)	20,570 ( 2.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2. 1),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7.6%, -0.4%p), 30~39세(3.4%, -0.1%p), 40~49세(2.1%, -0.4%p), 50~59세(2.1%, -0.4%p), 60세 이상(2.6%, -0.2%p) 모두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2.6%, -0.4%p), 고졸(4.0%, -0.2%p), 대졸 이상(3.2%, -0.4%p) 모두에서 감소함.

○ 2011년 전체 실업자 855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6천 명으로 전년대비 2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08천 명으로 67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2011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783(3.2)	769(3.2)	889(3.6)	920(3.7)	808(3.3)	853(3.5)	855(3.4)	740(2.9)	754(3.0)
15~29세	328(7.2)	315(7.2)	347(8.1)	340(8.0)	297(7.1)	336(8.0)	320(7.6)	292(7.1)	321(7.7)
30~39세	198(3.2)	194(3.1)	220(3.6)	214(3.5)	194(3.2)	193(3.2)	202(3.4)	171(2.9)	165(2.8)
40~49세	135(2.0)	142(2.1)	163(2.4)	165(2.5)	151(2.2)	147(2.2)	145(2.1)	131(1.9)	125(1.9)
50~59세	87(2.1)	87(2.0)	114(2.5)	120(2.5)	114(2.3)	121(2.4)	110(2.1)	94(1.8)	94(1.8)
60세 이상	36(1.4)	32(1.2)	45(1.6)	80(2.8)	53(1.9)	56(2.2)	77(2.6)	53(1.8)	49(1.8)
중졸 이하	119(2.1)	118(2.2)	130(2.5)	154(3.0)	112(2.2)	132(2.8)	133(2.6)	108(2.1)	109(2.3)
고졸	389(3.8)	384(3.8)	437(4.4)	420(4.2)	392(3.9)	424(4.2)	398(4.0)	349(3.5)	371(3.7)
대졸 이상	275(3.2)	268(3.0)	321(3.5)	346(3.6)	304(3.1)	298(3.1)	323(3.2)	284(2.8)	274(2.7)
취업무경험 실업자	41	42	39	44	38	47	46	44	54
취업유경험 실업자	742	727	849	876	770	806	808	696	700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2. 1),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1년 10월 명목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 2011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91천 원으로 전년동월(2,652천 원)대비 5.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해 2,354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9.2% 하락하여 192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0.8% 하락하여 414천 원을 기록함.
- 2011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정액급여 상승에 힘입어 2010년 10월 대비 3.3% 상승한 2,961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4% 상승한 1,238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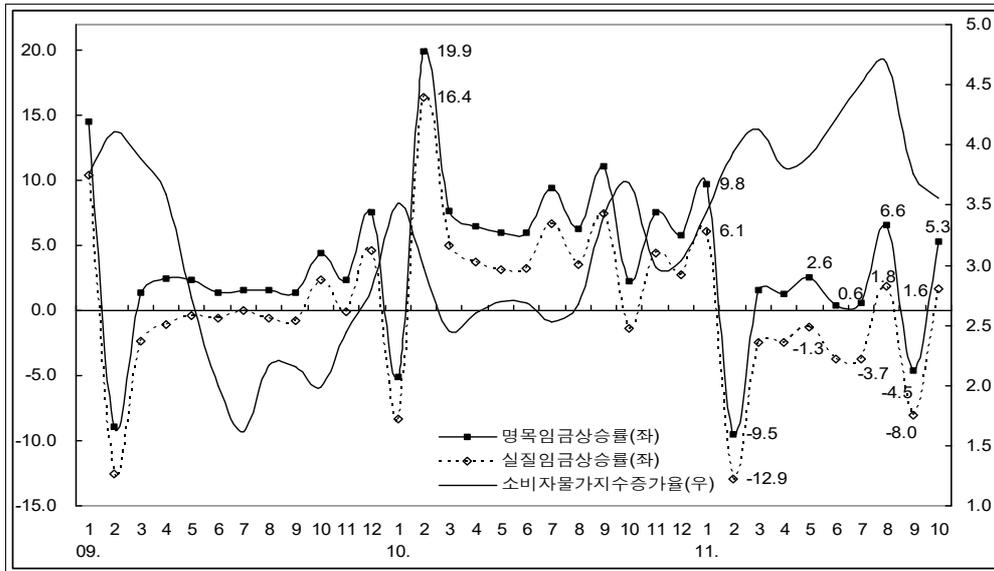
(단위: 천 원, 2010=100.0, %)

		2009	2010	2011							
				상반기			4/4분기				
				상반기	3/4분기	10월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 2.6)	2,816 ( 6.8)	2,744 ( 6.6)	2,666 ( 6.2)	2,652 ( 2.2)	2,766 ( 0.8)	2,830 ( 0.2)	2,703 ( 1.4)	2,923 ( 0.6)	2,791 ( 5.3)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63 ( 2.2)	3,047 ( 6.4)	2,966 ( 6.6)	2,903 ( 6.3)	2,866 ( 1.5)	2,930 (-1.2)	2,992 (-1.3)	2,869 (-1.2)	3,109 (-1.1)	2,961 ( 3.3)
	정액 급여	2,139 ( 4.0)	2,234 ( 4.5)	2,217 ( 4.5)	2,223 ( 4.8)	2,237 ( 4.5)	2,312 ( 4.3)	2,308 ( 4.4)	2,316 ( 4.2)	2,345 ( 5.0)	2,354 ( 5.2)
	초과 급여	175 (-2.2)	196 (12.2)	190 (15.3)	198 (13.4)	212 (13.0)	175 (-7.9)	168 (-8.4)	183 (-7.4)	182 (-7.1)	192 (-9.2)
	특별 급여	550 (-2.8)	617 (12.3)	560 (13.1)	483 (10.7)	418 (-15.7)	442 (-21.0)	516 (-18.9)	369 (-23.5)	581 (-18.5)	414 (-0.8)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73 ( 1.9)	1,056 (-1.6)	1,057 (-1.0)	1,062 ( 0.1)	1,064 (-2.9)	1,172 (10.8)	1,149 ( 9.2)	1,192 (12.3)	1,232 (15.8)	1,238 (16.4)	
소비자물가지수		97.1 ( 2.8)	100.0 ( 2.9)	99.3 ( 2.8)	100.4 ( 2.9)	101.1 ( 3.7)	103.2 ( 3.9)	102.8 ( 3.8)	103.6 ( 4.0)	104.7 ( 4.3)	104.7 ( 3.6)
실질임금 증가율		-0.1	3.8	3.7	6.0	-1.4	-3.0	-3.5	-2.5	-3.5	1.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더불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아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실질임금은 1.6% 증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6%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전체적으로 임금 증가

○ 건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임금 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14.8%), 도소매업(13.0%), 출판서비스업(13.0%), 숙박 및 음식점업(12.4%) 순으로 증가함.

－ 반면, 201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9%), 교육서비스업(-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에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10월	상반기	10월
전 산업	2,816 ( 6.8)	2,744 ( 6.6)	2,652 ( 2.2)	2,766 ( 0.8)	2,791 ( 5.3)
광업	3,000 ( 7.3)	2,933 ( 6.9)	2,741 (-0.9)	3,324 (13.4)	3,015 (10.0)
제조업	2,985 ( 9.1)	2,854 ( 8.9)	2,838 ( 3.8)	2,898 ( 1.5)	3,051 ( 7.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 7.0)	5,281 ( 8.2)	4,226 ( 2.9)	5,189 (-1.7)	4,233 ( 0.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 5.2)	2,360 ( 5.3)	2,355 ( 1.8)	2,391 ( 1.3)	2,454 ( 4.2)
건설업	1,944 ( 7.9)	1,925 ( 6.9)	1,878 ( 4.5)	2,175 (13.0)	2,156 (14.8)
도매 및 소매업	2,769 ( 7.1)	2,701 ( 6.8)	2,558 ( 3.0)	2,817 ( 4.3)	2,891 (13.0)
운수업	2,381 ( 5.4)	2,307 ( 5.7)	2,351 (-1.1)	2,316 ( 0.4)	2,477 ( 5.3)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 5.0)	1,434 ( 3.0)	1,489 ( 7.4)	1,624 (13.2)	1,673 (12.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 4.7)	3,320 ( 4.7)	3,145 ( 1.2)	3,670 (10.6)	3,552 (13.0)
금융 및 보험업	4,680 ( 4.7)	4,759 ( 7.1)	4,115 (-3.1)	4,796 ( 0.8)	4,252 (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 4.3)	1,983 ( 6.4)	1,792 ( 1.1)	1,990 ( 0.3)	1,947 ( 8.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 6.9)	3,782 ( 6.8)	3,697 (-1.6)	3,682 (-2.6)	3,882 ( 5.0)
사업서비스업	1,848 ( 8.2)	1,816 ( 8.3)	1,807 ( 5.7)	1,654 (-8.9)	1,683 (-6.9)
교육서비스업	3,157 ( 1.4)	3,154 ( 0.4)	2,901 ( 0.3)	2,978 (-5.6)	2,737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 2.4)	2,553 ( 2.0)	2,530 (-0.2)	2,429 (-4.9)	2,496 (-1.4)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7 ( 0.9)	2,054 (-0.4)	1,929 (-0.9)	2,078 ( 1.2)	1,955 ( 1.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102 ( 4.0)	2,064 ( 4.6)	1,987 ( 1.5)	2,147 ( 4.0)	2,177 ( 9.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 규모에서 명목임금 상승

- 2011년 10월, 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두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1년 10월 기준 2,60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300인 이상 사업체는 4,21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10월	상반기	10월
전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3,047 ( 6.4)	2,966 ( 6.6)	2,866 ( 1.5)	2,930 ( -1.2)	2,961 ( 3.3)
	정액급여	2,234 ( 4.5)	2,217 ( 4.5)	2,237 ( 4.5)	2,312 ( 4.3)	2,354 ( 5.2)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212 ( 13.0)	175 ( -7.9)	192 ( -9.2)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418 (-15.7)	442 (-21.0)	414 ( -0.8)
5~299인	상용임금 전체	2,699 ( 5.5)	2,639 ( 5.9)	2,538 ( 0.9)	2,611 ( -1.1)	2,603 ( 2.6)
	정액급여	2,082 ( 4.3)	2,065 ( 4.5)	2,079 ( 4.0)	2,177 ( 5.4)	2,216 ( 6.6)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87 ( 12.8)	147 (-14.2)	158 (-15.2)
	특별급여	441 ( 8.4)	403 ( 9.1)	271 (-22.3)	287 (-28.7)	228 (-15.9)
300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4,291 ( 9.1)	4,129 ( 8.8)	4,043 ( 3.5)	4,132 ( 0.1)	4,215 ( 4.3)
	정액급여	2,779 ( 5.2)	2,756 ( 4.8)	2,801 ( 6.3)	2,823 ( 2.4)	2,839 ( 1.3)
	초과급여	268 ( 9.6)	257 (10.7)	301 ( 14.0)	282 ( 9.7)	311 ( 3.4)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941 ( -6.7)	1,027 ( -7.9)	1,065 (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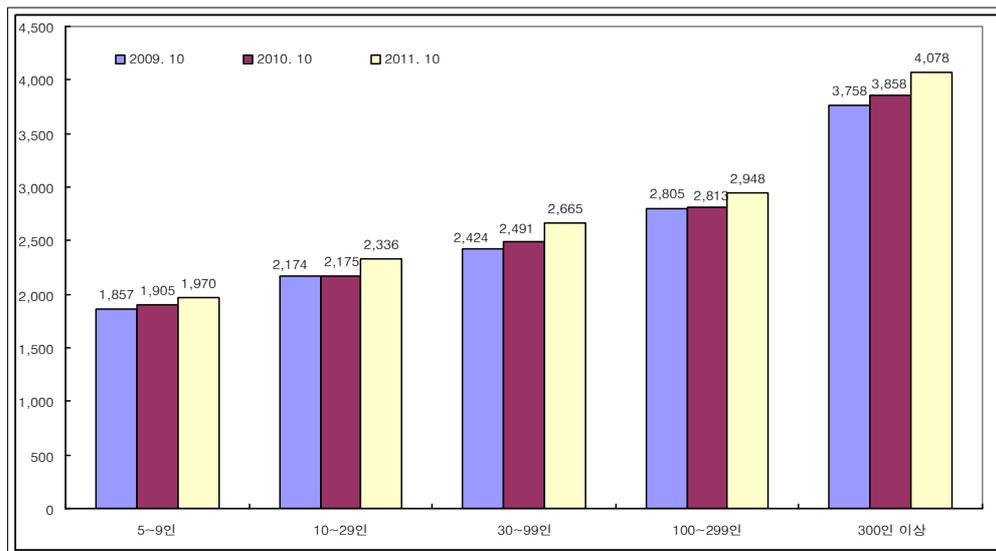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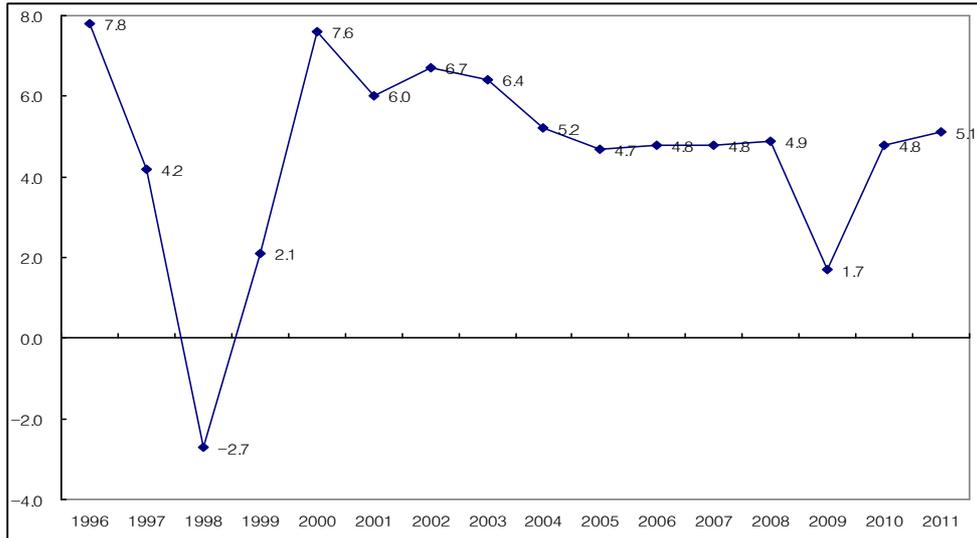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 5.1%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를 기록함.

- 2011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0년도 인상률(4.8%)에 비해 0.3%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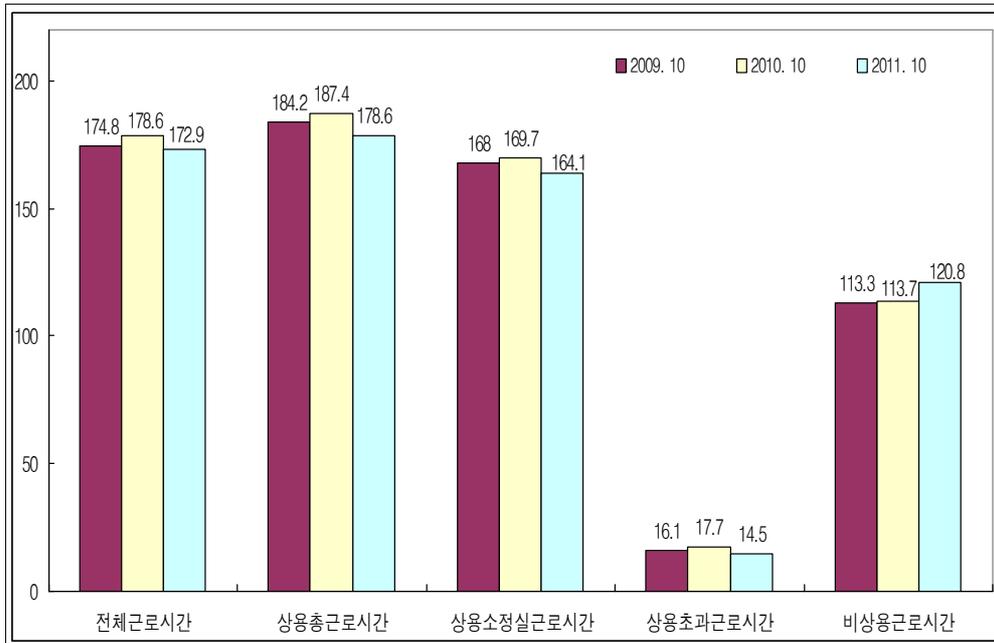
◆ 2011년 10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 2011년 10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함.

- 2011년 10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178.6시간)에 비해 5.7시간(3.2%)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8.6시간으로 전년동월(187.4시간)대비 4.7%, 소정실 근로시간은 164.1시간으로 전년동월(169.7시간)대비 3.3% 감소하였고, 초과근로시간은 14.5시간으로 전년동월(17.7시간)대비 3.2시간(-18.1%) 감소함(그림 9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0.8시간으로 전년동월(113.7시간)대비 7.1시간(6.2%)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1년 10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69.1시간, -8.1%), 도소매업(170.1시간, -5.3%), 부동산 및 임대업(191.6시간, -5.1시간)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180.2시간, 7.5%), 건설업(150.9시간, 3.2%)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1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1.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9.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09	2010	2011			
			상반기	10월	상반기	10월
전 산업	176.1(-0.3)	176.7( 0.3)	175.1( 0.6)	178.6( 2.2)	175.1( 0.0)	172.9(-3.2)
광업	187.6( 4.0)	188.1( 0.3)	185.2(-0.8)	188( 2.2)	185.5( 0.2)	182.4(-3.0)
제조업	188.5(-0.8)	192.1( 1.9)	190.5( 3.4)	195.3( 3.5)	189.9(-0.3)	188.4(-3.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9( 2.5)	176.9(-0.6)	174.9( 0.2)	173.1(-2.6)	175.2( 0.2)	172.4(-0.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 0.3)	192.9(-0.6)	191.2(-0.1)	193.4( 0.2)	184.7(-3.4)	181.6(-6.1)
건설업	147.2(-5.5)	146.1(-0.7)	146.9(-2.1)	146.2( 4.6)	154.2( 5.0)	150.9( 3.2)
도매 및 소매업	179.0( 0.2)	177.2(-1.0)	175.8(-0.8)	179.6( 1.0)	173.7(-1.2)	170.1(-5.3)
운수업	184.4( 8.0)	184.6( 0.1)	183.0( 0.9)	185.3( 0.3)	178.0(-2.7)	181.6(-2.0)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61.2(-1.8)	167.6( 2.9)	186.3(15.6)	180.2( 7.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166.8( 0.4)	166.2(-0.4)	164.8( 0.6)	167.1( 0.6)	162.9(-1.2)	159.3(-4.7)
금융 및 보험업	166.8( 0.5)	165.3(-0.9)	163.5(-1.4)	164.9( 0.0)	161.2(-1.4)	158.9(-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9.2(-1.0)	202( 0.5)	193.2(-3.0)	191.6(-5.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 0.1)	166.3(-0.8)	164.5(-0.5)	165.9(-0.4)	164.2(-0.2)	161.8(-2.5)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 0.6)	176.9(-0.6)	184( 2.3)	168.7(-4.6)	169.1(-8.1)
교육서비스업	153.7( 1.9)	149.9(-2.5)	147.7(-3.2)	154.3( 2.6)	150.3( 1.8)	149.2(-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 0.2)	176.5( 0.1)	174.4( 0.2)	178.4( 1.1)	171.5(-1.7)	170.7(-4.3)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6( 1.6)	158.7(-1.8)	157.6(-2.1)	161.4( 1.3)	155.4(-1.4)	153.8(-4.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2.7( 0.1)	173.5( 0.1)	174.0( 0.8)	165.5(-4.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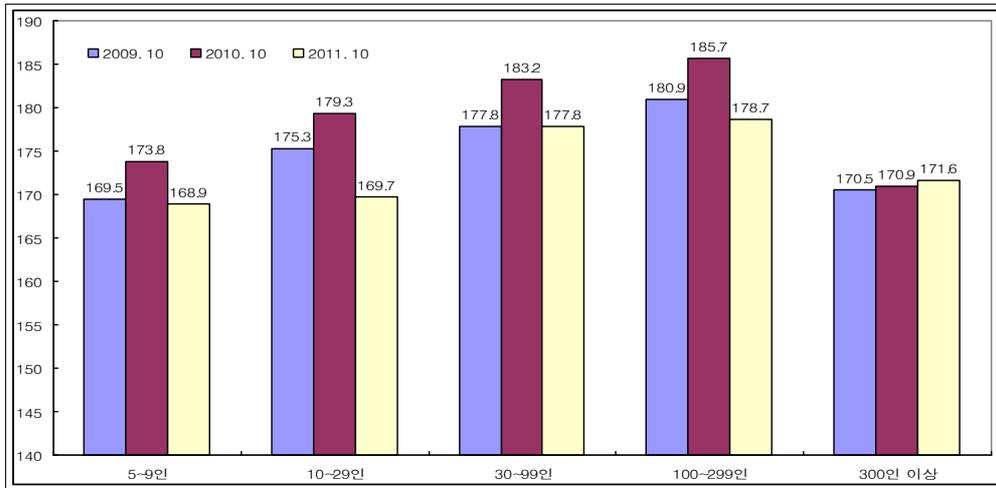
◆ 5~299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10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5~299인 사업장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동향

###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4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2년 1월 18일 기준)는 9,103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 개소, %)

	2011.1.1~1.25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4	1	
종 결	2	0	-
진 행	2 (9)	1 (13)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9,103	20,921	△43.5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월 18일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1월 4일,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3지회는 현대차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 및 투쟁계획 등을 확정함. 주요 요구사항은 3지회 간부들의 현장 순회 및 노조활동 및 해고자 신분의 지회간부 현장출입을 보장하고, 현대차지부와 사내하청지회 간 연대회의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1월 7일, 전주지회는 엔진부(500여명)와 트럭부(900여명) 조합원이 특근을 거부함. 엔진부는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사측의 계획에 반발하여 특근을 거부하였고, 트럭부는 제조 라인과 상관없는 구역에서 발생한 지게차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측이 노조의 라인가동을 중지한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자, 이에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특근을 거부함.
- 1월 13일,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 6명과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각 4명 등 16명은 사업장 현지실사를 위해 울산 공장 방문

■ 한진중공업

- 1월 3일, 사측은 생산직 74명에 대한 휴업 인사발령을 내었고(1.30~6.30), 4~5월 경 방산부문 물량감소로 생산직 140여명 추가휴업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관리직 일부도 순환휴업(2개월)을 검토 중에 있음.
- 한편, 1월 4일경 노사는 2009~11년 임단협 8차 실무교섭을 실시함. 실무교섭의 주요 의제는 전임자 요구(노측 7명 요구, 사측 근로시간면제자 3명 외 불가). 사측은 단협안 핵심 8개항을 선별하여 노조측에 제시함. 이에 노조는 검토 후 차기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교섭을 종료함. 8개항의 내용은 비공개로 알려진 바로는 조합원 자격, 징계, 해고, 상여금, 휴일, 휴가, 재해보상, 의료비지원 등임.
- 1월 11일, 한진중공업 근로자 김상욱 등 3명, 부산시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함. 노조 명칭은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이며, 상급단체는 미가입된 상태임. 조합원 수는 설립신고 당시 17명으로 알려짐.<sup>1)</sup>
- 1월 12일, 노사는 2차 임단협 본교섭을 실시함. 사측은 1월 4일에 제시한 단협 핵

1) 김상욱 위원장은 전 지회장 채길용 집행부에서 수석부지회장을 역임하였고, 2011년 제7기 임원선거에서 현 지회장 차해도(55.1%)에 이어 2위 득표(32.1%)를 한 바 있음. 민주노총 탈퇴를 선거공약으로 표방한 바 있어 현 집행부의 노선차이가 큼.

심 8개 조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고, 노조는 답변 없이 설 명절 전 타결목표로 선임금협상을 주장하다 진전 없이 교섭이 종료됨. 한편 이날 부산광역시는 한진중공업노동조합(2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함. 2노조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였다며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대표노조로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2)

- 1월 19일, 사측은 생산직 84명을 대상으로 휴업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보함(2월 1일자). 1월 말 현재, 휴업자 수는 434명으로 집계됨(기존 350명 휴업 중).
- 사측은 2노조와의 간담회 시 제기된 긴급생활안정 대책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월 20일에는 전체 임직원 1인당 1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형식(무이자, 상환시기 등 추후협의)으로 지원키로 결정함.
- 1월 말 현재까지 1노조측이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통보한 이후 교섭이 재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분회

- 1월 4일, 노조는 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다 지난 1월 6일, 노조에 교섭개최를 요구함. 이는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이 법원에서 결정됨에 따라 교섭불이행 시 매회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월 6일 노사는 상건례를 실시하였으나 교섭원칙에 대한 이견(노조는 주 2회 교섭-본교섭과 실무교섭 각 1회-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2월부터는 주 1회 교섭 입장)으로 교섭은 종료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직장노조와 사회보험 지부는 2011년 12월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였음. 주요 합의내용은 전년대비 총인건비(자연증가 포함) 5.5% 인상, 2009년 4월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임금회복은 기존 직원의 70% 수준으로 합의(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유관기관과의 차별임금 해소를 위해 ‘차별임금해소대책반’을 2011년 12월 31일 이내에 구성하는 등의 내용임.
- 1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 지부는 조합원 교육 및 임시총회를 개최함. 이날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3.4%로 가결함. 지난 2011년 10월

2) 또한 1월 17일, 현재 조합원이 360여명으로 과반수(해고자 제외)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한진중공업지회(1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복수노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비난, 2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조 파괴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한편, 2노조측의 과반수 조합원 확보 주장(1월 17일 현재, 해고자 제외 360여명)과 관련하여 1노조 및 사측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18일부터 단협 관련 3차례 본교섭 및 6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사회보험 지부는 지난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단협 관련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근로시간면제자: 노조 → 11명 인정 요구, 사측 → 7명 인정

정년연장: 노조 → 57세에서 60세 연장, 사측 현행유지

병가: 노조 → 현행유지 또는 상향조정, 사측 축소

○ 주요 분류사업장 등

■ 부산일보

- 지난해에 이어 노조는 사장퇴진·징계철회·정수재단 사회환원 등을 요구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출근선전전을 실시하고 있음. 신문발행은 편집국 조합원 주도로 발행되고 있으며 쟁의투쟁 특보가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또한 부산일보의 투쟁을 지지하는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은 지난 2011년 12월 6일부터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 중임.
- 한편, 지난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1월 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짐. 이 가처분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처분 판결의 주요내용】**

- ① 노조는 노조 및 간부는 사장실·6층 회의실 출입 등 실력으로 방해해서는 안됨.
  - ② 사장실을 출입하거나 평화적 설득·단결에 의한 시위 이외의 방법으로 저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저지하게 해서는 안됨.
  - ③ 사장비판 유인물 배포행위 및 사장실 점거 등 위반시 노조는 1회 1일당 2천만 원, 노조간부는 1회 1일당 각 2백만 원 지급해야 함<sup>3)</sup>
- 1월 9일, 노조는 신문 1면에 부산일보 조합원들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위해 상경투쟁(기자회견 개최 등)을 하였고,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함.
  - 1월 10일, 노조는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과 김진환 이사대우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회계부정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소함.
  - 1월 25일, 노조는 쟁의지침에 따라 회사 1층 로비에서 신임사장(이명관) 출근저지(20여명) 및 출근선전전을 실시함.

3) 다만, 이 판결에서는 “사장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신청은 기각하였음.

■ 국민일보

- 1월 3일,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파업을 계속 중임. 교섭은 2010년 11월 23일 이후로 중단된 상황임. 한편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은 초판 미인쇄, 지면 축소(36면→32면),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자 투입 등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
- 노사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노사 주요 쟁점】

- 임금: 노조는 임금총액 기준 7.5% 인상(당초 18%에서 15%, 13%, 9.5%로 기수정), 그러나 사측은 3.5%(당초 2.5%)
- 정년연장: 노조는 55세 → 65세,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
- 기타 쟁점: 노조는 주5일 근무비와 휴일근무비 현실화, 종교국장 평가투표제 도입, 조합원 자녀 법정보육료 지원 등 요구, 사측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협사항으로 교섭불가 입장을 밝힘.<sup>4)</sup>
- 한편, 12월 30일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어 언론노조 국민CTS지부와 통합 찬반투표를 가결함(92.3% 찬성, 재적 156명 중 투표 91명, 찬성 84명). 1월 10일, 국민일보 지부와 국민CTS지부는 (가칭)언론노조 국민일보CTS지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부 합병(통합)에 따른 지부운영규정 개정안을 가결함(재적 25명(국민일보지부 19, 국민CTS지부 6) 중 참석한 20명 전원 찬성).
- 1월 20일에는 합병지부인 ‘언론노조 국민일보 CTS지부’가 임시총회 개최함.

■ MBC

- 1월 6일, MBC 기자회견은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년 MBC 뉴스의 시청률이 추락을 거

4) 그러나 교섭쟁점은 표면적인 이유임. 이미 2001년 국민일보노조는 석간전환 저지를 위해 45일간 파업을 벌였음. 이 때의 핵심 요구사항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회장의 퇴진이었음. 조희준 전 회장은 당시 국민일보 설립 이후 평생독자기금을 포함한 183억 원 횡령, 증여세 21억 원, 법인세 25억 원 등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 이후 조민제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용기 목사 가족 내부에서 분란이 생김. 그 이유는 2007년 12월 조희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모친인 김성혜 씨(한세대 총장)와 함께 복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서임. 이에 조민제 사장이 국민일보노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는 조희준 전 회장의 복귀를 막아야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민제 사장의 ‘경륜하이드로에너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배임혐의로 기소되면서, 노조는 조민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음. 이에 조민제 사장은 노조의 편집국장 교체 및 편집권 독립, 종교국장 평가투표제 도입 등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고, 2011년 10월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해직시키면서 임단협 협상도 사실상 거부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노조는 더 이상 교섭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업에 돌입한 것임.

답"하여, 이에 대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뉴스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이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1월 9일 87.2%로 불신임을 결정함. 이에 노조는 불신임 결의를 사측이 수용치 않을 경우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함. 사측은 기자회견의 성명 발표 및 불신임 투표에 대해 ‘명백한 사규 위반’으로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임.

- 1월 9일, 노조집행부는 사옥 1층 로비에서 뉴스와 제작프로그램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실시함.
- 1월 17일, 사측은 기자회견장과 영상기자회 등에 대해 ‘사내질서 위반’으로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정회함. 한편 기자회견은 총회를 개최하여 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1월 20일, 기자회견은 제작거부 찬반투표가 가결(84%)되었음을 발표하고, 1월 25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 1월 25일, 기자회견은 제작거부에 돌입함. 사측은 방송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일부 편성제외·시간축소 등 비상편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자회견의 제작거부를 사규위반으로 규정하여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임.
- 1월 26일,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MBC본부 해체(서울 및 지역사 통합 지부를 개별 지부로 해체)” 안건에 대해 논의. 그러나 본부해체의 논의배경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미디어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 작용하여 노조의 입장이 각기 다름. 서울은 반대, 지역사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지역사회 통합(강릉·삼척, 청주·충주)에 대해서는 서울은 소극적, 지역사는 적극적인 입장임.

■ 인천공항세관 용역업체

- 2012년 1월 1일부터 인천공항세관 수하물 검색대에서 전자택 부착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신규 용역업체에 채용되지 못한 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시위 중. 인천세관측이 기존 케이티지엘에스(KTGLS)에서 포스트원이라는 용역업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포스트원에 기존 케이티지엘에스 소속 조합원 일부만 고용이 승계된 것이 주요한 이유임.
- 인천세관측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 용역업체에 협조 요청 등 노력 중이지만 채용은 용역업체 소관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지난 2011년 12월 30일, 세관과 노사는 고용승계를 논의하였으나 입장차로 인해 논의가 결렬되고, 12월 31일자로 새 용역업체로 업무가 인수인계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못한 조합원들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 1월 현재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인천공항여객터미널 3층(출국장) 버스승강장 주

- 변에서 조합원 31명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중에 있음. 지난 1월 6일에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등이 지지방문을 하였음.
- 1월 18일에는 세관, 노사가 고용승계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함.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합의내용】**

- ① 포스트원은 전 조합원(29명)의 고용을 승계하며, 일하던 위치 변경 없이 前 업체에서 지급하던 임금을 보장
  - ② 인천공항세관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
  - ③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고소·고발(케이티지엘에스, 포스트원, 세관) 취하
  - ④ 전 조합원 29명에 대한 근무시작일은 2.1자로 하며, 포스트원은 향후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 1월 25일, 노사는 교섭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함. 기존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후선역제도 4급까지 확대, 상시명예퇴직제도 변경(상시 삭제) 등에 대해 노사가 TFT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다만 후선역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사측은 ‘TFT에서 합의’를, 노조는 ‘TFT에서 논의’를 주장하여 합의하지 못함.
  - 그러나 그 이외 임금은 2010년도 2% 인상, 2011년도 4.1% 인상으로 의견을 접근함. 1월 26일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여 교섭상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임.
- 온라인
- 전북 김제 소재의 청소용역업체인 온라인은 복수노조 사업장임. 1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이며, 2노조는 온라인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가입하지 않음.
  - 1월 4일, 1노조는 성실교섭, 공개경쟁입찰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돌입함. 사측과는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황임. 지난해 12월 1노조는 전주대 총장과 면담을 통해 공개경쟁입찰 즉각 실시 및 위탁금액 원가산정서 공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향상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대 총장은 공개경쟁입찰 실시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기타 요구사항은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사측은 12월 16일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교섭을 미루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는 재파업을 통보함. 이미 사측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1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거부하였고, 2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공고함.
-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노조는 임금·단체협약 등 교섭을 통해 임금교섭은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단체협약은 논의 중에 있었음. 이에 1노조는 8월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답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에 인용결정을 내림. 사측은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임.<sup>5)</sup>
- 1월 6일, 1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1월 10일 교섭장소 변경을 요구함. 한편 사측은 단체교섭권 위임 여부에 대해 1노조 교섭위원들(전북평등지부)에 대해 운수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였는지 통보가 없었다며 운수노조에 교섭권 위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 1월 4일, 노조는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함. 노사간 교섭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중단된 상황임. 노조의 핵심요구는 유급휴일 확대(구정·추석 각 유급 3일, 무급 2일), 노조전임자와 간부의 현장출입 보장임.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임.<sup>6)</sup>
- 이미 노조는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17~18개사 및 신규 9개사에 대해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사측은 모두 불참하였음. 그러나 12월 14일, 노조와 사측 4개사는 설 유급휴일 2일을 인정하는데 합의하여 SK현장에서의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1월 18일, 사측 4개사는 쟁의행위 참가조합원 및 상급단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함. 직장폐쇄 신고사유는 조합원들의 집단적 휴게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집회 참가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롯데백화점 창원점 용역업체

- 롯데백화점 창원점에는 일반노조 롯데백화점 비정규직지회(1노조, 민주노총)와 제이애플노조(2노조, 한국노총)가 병존하고 있음. 지난해 12월 백화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제이애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백화점측이 시설관

5) 인용결정의 내용은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 인용결정의 핵심은 전주지방법원이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보았기 때문임. 이 부분이 고등법원에서 다투지고 있음.

6) 이미 타지부는 지난해 타결(전남동부, 경남서부, 포항, 충남지부 서산지역), 단체협약 잠정합의(전북)에 이르렀음. 충남지부 당진지역은 12월 말까지 8차 임단협 중임.

리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조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지회가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음.

- 1월 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일반노조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살인해고 롯데백화점 규탄 및 집단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월 11일에는 ‘집단부당해고·민주노조 파괴 롯데백화점 규탄 2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음.

- 1월 19일에는 창원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송순호 시의원 등 6명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창원시의원 54명 중 47명이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바란다는 서명용지에 서명하였음.

■ 구로구보건소 방문간호사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가입된 방문간호사 조합원들은 지난 1월 5일 조합원 2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구로구청장실 옆 직소민원실 점거농성 중임. 구로구보건소는 2012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방문간호사 14명을 채용하였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최종면접을 거쳐 조합원 2명이 탈락하면서 농성을 전개함.

■ 오투기토텔시스템

- 서울 소재 청소용역업체인 오투기토텔시스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음.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고등법원지부와 한국노총 서울법원종합청사환경노조가 병존함.
- 2011년 12월 14일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측을 고발함. 사측은 2011년 11월 말 근로자 73명의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중 67명은 재계약함. 이 과정에서 지부장 등 6명은 재계약을 거부함.
- 1월 6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고등법원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지부장 안혜숙 등 6명의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함.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1월 8일, 엔진5부 S엔진 조립라인 통로에서 한 조합원의 몸에 불이 붙은 채 타고 있는 것을 식사하고 돌아오던 동료가 발견하고 소화기로 소화함. 분신을 시도한 조합원은 울산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지를 받았으나, 1월 15일에 사망함.
- 분신 이유에 대해서는 M/H협의를 대한 불만과 최근 본사의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M/H협의를 관련하여 각종 부서현안 관련 대의원들과 마찰을 보여옴. 또한 1월 4일 분신한 신○○ 조합원은 본사 감사실장에게 메일로 S엔진 관련 품질지수에 미달되는 엔진이 완성차에 탑재되고 있다며 제보한 바 있음. 본

사에서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신○○ 조합원 본인이 품질지수가 미달된 엔진을 출고시킨 것으로 판명됨. 이에 감사실은 품질테스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종결되었으나 현장조합원들은 신○○ 조합원 때문에 감사가 내려오고 피곤하게 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함.

- 1월 8일, 노조는 사업부대표자 회의 개최 후 ‘신○○ 조합원의 분신은 명백한 회사의 현장통제와 현장탄압 때문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신○○ 조합원은 작업장(테스트 공정)을 이탈하지 마라, 이탈시 근무시간에서 빼겠다 등 현장통제와 현장탄압의 철저한 희생자”라고 하면서 “엔진5부 매암동 공장의 엔진 불량과 품질문제에 대해 1월 4일 부사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매암동 공장이 감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현장관리자들의 악랄한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함.
- 1월 9일, 대의원 간담회와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신○○ 조합원은 현장통제와 현장탄압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회사의 현장통제 중단을 요구함. 또한 현장통제수단인 공장혁신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함. 이날 오전 9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5부(89명)는 전면 가동을 중단함.
- 1월 10일, 노사는 분신 관련 실무협상을 타결함. 타결 내용은 ① 치료비 및 생계비 : 산재처우에 준하는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 ② 명예훼손 방지 : 노사 공동노력 ③ 공장혁신팀 : 해체(단, 품질관리업무는 다른 팀으로 이관) ④ 관련책임자 처벌 : 철저히 조사한 후 관련책임자 엄중 인사조치 ⑤ 대표이사 사과 : 사과문 전 공장 식당 게시 등임.
- 1월 15일, 신○○ 조합원이 사망함. 이후 1월 18일, 유족과 사측 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상호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여 협상중단 상태가 계속 중임.7)

■ 철도노조

- 1월 10일,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비상체제로 조직 전환, ‘철도민영화는 매국행위’ 2월 초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와 철도민영화 저지 1차 투쟁지침 발표함.
- 이날 철도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KTX민영화는 시민안전과 철도산업을 독점재벌에게 팔아먹는 매국행위”라 규정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학계 등을 총 망라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함. 이후 현장순회 및 비상총회, 전 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임.
- 한편, 시설조합원들은 선로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1월 4일부터 철도공

7) 유족측은 위로금 7.18억 원, 학자금 2명, 자녀 채용 1명, 미망인 직장 알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사 대전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계속 농성 중에 있음.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악용되는 비정규직법과 위선 가득한 신년사들’이라는 논평 발표
  - 1월 4일, 민주노총은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회피해 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대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의 기한인 2년이 넘지 않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함. 특히 2년 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료(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해 무려 70.4%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대기업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사회적 책임, 일자리 중요성 등을 약속하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함.
  -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월)을 제정하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9월)을 이어서 수립’했다며 성과로 내세웠지만, 인천공항 등에서는 사내하청 교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악용되고 회피될 뿐인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법은 근본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을 일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평함.
- 한국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발표
  - 1월 6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2012년 표준생계비 발표… 초등자녀 2인 포함 4인 가구 5,158,981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 표준생계비는 5,158,981원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은 2011년 3/4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2,922,923원으로서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임금이 56.7%에 불과해 월급만으로는 표준적인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힘.
  - 전년대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전 가구 평균 4.6%로 나타났고, 식료품비 폭등(6.4%)과 유가상승에 따른 교통비 증가(8.7%)가 생계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정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충분하다는 논평 발표
  - 1월 25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을 고쳐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켜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하면서, 이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로시간 지침을 내림으로써 잘못된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의 이날 논평의 핵심은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될 뿐, 법개정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내용임.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한 논평

- 1월 4일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한도 위반 시정을 위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근로개선계획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1월 5일,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1,400명 이상 신규채용(현대차 900여 명, 기아차 500여 명)이라고 말했지만 그 것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밝히지 않아 채용에 대한 구체성이 빠져 있다고 봄. 둘째, 연장근로위반 기준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어 휴일특근에 대해 8시간 이상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셋째, 특근이나 잔업 등 근로시간 관리를 대의원이 결정해 왔다고 왜곡하였고, 노조를 배제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잔업·특근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임. 넷째, 3조3교대로 개편하여 밤샘노동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이기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함.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신○○ 조합원 분신에 대한 성명발표

- 1월 9일, 금속노조는 신○○ 조합원의 분신에 대해 회사가 “직원들 사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신○○ 조합원의 분신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현장통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노조는 ① 관련책임자 엄중 처벌, ② 현장통제 및 현장탄압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표이사 공개사과, ③ 현장탄압의 도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④ 신○○ 조합원 관련 제반 비용의 회사 부담, ⑤ 신○○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⑥ 가족 및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충될 기타 요구 등을 사측에 요구함.
- 이에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측이 “최근에는 공장혁신팀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사사건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등 한층 더 통제적 노무관리를 강화해 온 결과”라고 봄.

○ 한국노총, 임금체불에 대한 상시적·근본적 대책 촉구

- 1월 12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체불임금의 규모는 562억 원에 이르며, 3,532개의 사업장에서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함.
-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추석을 앞둔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체불노동자수나 체불규모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물가불안과 경기침체 등 상시적 경제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파국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 양노총, 법제처의 육아휴직 관련 근무경력 불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

- 1월 1일, 한국노총은 최근 법제처가 육아휴직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 특히 이 날 성명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이고, 또 보도에 따르면 여성부를 제외한 문광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면서 이들 부처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힘.
-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출산과 육아는 인류와 사회의 보편적 이해에 필수적인 행위인데 이를 이유로 법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은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함. 더구나 “정부는 최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은 정부의 기존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된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비판

- 1월 16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이어 1월 16일자로 ‘추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되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로서 무기계약직 제도를 활용하여 차별의 고착화와 우리 사회의 총임금 저하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상시업무 판단 기준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게다가 전문직·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식으로 폭넓게 예외를 둬므로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애초 ‘공공부문의 개별 예산항목으로 총액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용역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선정단계의 적격심사 기준에 고용승계항목을 명시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경영계 동향

○ 경총,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발표

- 1월 3일, 경총은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 조사에서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함.
- 이 조사는 경총이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의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6.5%는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전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로 응답함(26.1%). 이러한 결과에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나타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총선과 대선에 있는 올해 더욱 심해지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결집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12.8%)’도 주요 노사관계 불안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노사관계의 불안은 주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과 금속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노사관계의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6%가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을 지적하였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연중투쟁을 예고한 ‘금속부문’이 21.5%로 그 뒤를 이었음.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40.9%)’을 꼽았으며, 이러한 원인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의 임금안정 필요성과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 간의 대립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또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복지 요구가 늘어나면서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21.9%)’도 그 다음 이슈가 될 것이라 보았음.
-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노동정책(행정)은 ‘비정규직 종합대책(2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1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장 점검(14.8%)’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자세한 것은 한국경총의 홈페이지를 참조(<http://www.kefplaza.com/>).

○ 경총,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보도자료 발표

- 1월 25일, 경총은 휴일특근 불인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경총은 기업들에게 ‘인력을 운용해 온 관행에 비추어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말 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조치로 최대 1/3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근로자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또한 경영계도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어 지난 2010년 노사정이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연간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정부, 국회 등 동향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근로자 4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3억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12월 9일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폐업해 버린 미국 국적의 사업주 박모씨를 1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함.
- 박모씨는 브라운관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지난해 11월 30일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사업체를 갑자기 폐업해 버려 4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무려 93억 원이나 체불함.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습사업주 명단 공개 및 금융·신용제재 조치 예고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및 금융·신용제재를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 개정법은 2012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표 11〉 설 대비 2주간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

	발 생			지도기간(1.2~1.15) 중 처리 현황			처리 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사업장수	7,460	4,136	3,546	3,860	2,844	1,032	3,746
건수	11,556	5,458	6,098	5,335	3,431	1,904	6,221
근로자수	17,845	8,061	9,784	7,943	4,752	3,191	9,902
체불금액(억 원)	932	358	573	361	180	181	571

- 또한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임금채불 6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명의 악의·상습채불사업주를 구속하였고, 2건은 기각되었으며, 2건은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고용노동부는 도산기업 근로자 1,144명에게는 58억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4,270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힘.

○ 2011년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2011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5개사에 대해 시상함. 수상기업은 STX메탈, 웅진씽크빅, 하이닉스반도체, 한전케이피에스, 호텔신라의 노사 대표들이었음.
- 수상자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국내기업의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것임.<sup>8)</sup> 2010년 시가총액 기준 국내 상장기업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200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조사를 위한 평가지표는 최근 사회책임의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ISO26000 등의 국제기준들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나라 제도와 노동시장에 부합하도록 구축함.

○ 중앙노동위원회, 2011년 조정성립률 발표

- 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도 조정성립률이 70.2%를 기록하여 전년도 64.5%에 비해 5.7%p 상승했다고 발표함.
- 이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전담한 1963년 이후 최고의 조정성립률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8.5%였던 조정성립률이

8) 조사항목: ① 고용 및 삶의 질, ② 노동 인권 및 노사관계, ③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상생, ④ 건강한 직장, ⑤ 지배구조 및 공정운영 등임.

- 2010년 64.5%, 2011년 70.2%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조정과정에서 사업장에 나가 현장조정을 진행한 경우, 조정성립률이 75.7%로 전년(2010년)대비 9.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조정성립률 상승의 특성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합단체별 조정성립률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상승폭이 전체 조정성립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 한국노총: (2010) 77.0% → (2011) 85.1%/민주노총: (2010) 59.8% → (2011) 62.8%
    - \* 미가입: (2010) 80.0% → (2011) 75.9%
  - 또한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성립률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조정성립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에도 100인 이하 사업장의 조정성립률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에도 조정성립률이 상승하였음.
    - \* 100인 이하: (2010) 73.5% → (2011) 76.2%
    - \* 300인 이하: (2010) 60.6% → (2011) 65.7%
    - \* 500인 이하: (2010) 53.7% → (2011) 71.8%
    - \* 500인 초과: (2010) 52.2% → (2011) 57.7% **KLI**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